

대구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3가단97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A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은희

변론 종결2024. 11. 5.

판결 선고2024. 12. 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950,1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들은 부친인 망 D이 2023. 5. 25. 사망한 이후인 2023. 5. 28.경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모여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정리하기로 합의하였다.

4. 상속금액 분할 전 선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모친 사고(17.5.30.) 이후 부친 사망(2023.5. 26.) 이전 부모를 위해 사용한 경비 중 상속인 4인(원고와 피고들 및 E)이 2차 회의에서 인정한 지출분

② 부친 장례비 일체

나. 원고는 모친인 망 F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2017. 6. 5.경부터 2017. 11. 6.경까지 합계 6,000,000원을 입원비 등으로 지출하고, 2017. 12. 8.경부터 2019. 5. 8.경까지 F의 간병비 등으로 합계 30,000,000원을 지출하며, D이 사망한 후 장례비 등으로 합계 12,700,660원을 지출하는 등으로 합계 53,7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 법정상속분인 1/6 지분으로 정산한 8,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비용 정산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2023. 5. 28.경이 아닌 다른 시기에도 비용 정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비용 정산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상속합의서(갑 제10호증)는 원고가 2023. 5. 28. 공동상속인들 간에 협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원고의 입장에서 정리한 초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23. 5. 29.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리며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를 구했으나, 피고들은 이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② 원고가 작성한 상속합의서(갑 제10호증)에는 F의 병원비나 D의 장례비 등의 정산에 관한 내용 외에도 상속재산분할협약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원고는 단체 카카오톡방에 2023. 6. 13. "지난 번에 얘기한 대로 만나서 상의하고자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2023. 6. 15. "이번 주는 완전 합의되면 좋고, 안되면 상속 초안 정도를 파악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라고 글을 올리는 등으로 2023. 5. 28.

공동상속인들 간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표현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세훈